

# 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65,865,539	16,975,966
일반회계	565,865,539	16,975,966

제 2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와 같다.

제 3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'명시이월사업조서'으로 한다.

제 6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9,858,72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7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.